

- 나. 지선(支線)철도
- 2.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
 - 가. 고속철도노선
 - 나. 준고속철도노선
 - 다. 일반철도노선

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,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신설 2015. 12. 29.>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[제목개정 2015. 12. 29.]

제4조의2(철도차량의 유형 분류)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,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- 1. 고속철도차량
- 2. 준고속철도차량
- 3. 일반철도차량

[본조신설 2015. 12. 29.]

제5조(면허 등)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볼일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2. 29.>

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6조(면허의 기준)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
2.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
3.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
4.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(臺數),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 - 가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나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다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라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2.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. 다만, 제1호가록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2. 29.]

제8조(운송 시작의 의무)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